



남양유업, 대리점주 장학금 6억 돌파 남양유업 대리점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 누적 6억원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유업계 최초로 대리점 장학금 복지제도 및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마련해 대리점 상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장학금 복지제도 및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이 마련된 201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은 대리점주 자녀는 모두 477명이며, 금액으로는 6억원을 돌파했고, 출산장려금으로 17개 대리점에게 총 51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남양유업



롯데하이마트, 파트너사 동반 '김장나눔 봉사활동' 진행 15일 서울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롯데하이마트 김현철 상품본부장,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김민숙 관장, 삼성전자 연경희 하이마트영업그룹장, 대우전자 윤우석 B2C영업담당, 롯데하이마트 하영수 MD전략부부장, 롯데하이마트 조준석 상품개발부부장, 롯데하이마트 황영근 가전부부장, LG전자 안전철 전략법인실장, 대우위니아 김석곤 전략영업담당,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이 김치를 담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건보공단 서울본부, 남북하나재단과 손잡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14일 서울본부 스마트회의실에서 남북하나재단과 양 기관 포괄 상호협력 교류관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진중호 건보공단 서울본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

발달장애인을 위한 '2018 JW 아트 어워즈'

JW중외제약 복지재단, 시상식 개최

가을의 끝자락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술축제가 열렸다.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서울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2018 JW 아트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JW 아트 어워즈'는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술적 재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 기업이 장애 미술인을 대상으로 시도한 최초의 공모전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꿈피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만 16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순수미술과 일러스트레이션 2개 분야의 작품을 모집했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은 1차 접수된 작품 229점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본상 수상자 8명을 선정했으며, 총 1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 수상자로는 종이끈으로 재건축 현장을 그려낸 조영배 씨(21세, 자폐성 장애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종호 이사장(오른쪽)이 대상 수상자 조영배 씨에게 '2018 JW 아트 어워즈'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2급)가 선정됐다. 대상작 '크레인1'은 오늘의 작가로 성장하게 한 과거의 소중한 시간과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강선아 씨는 최우수상, 이진원·정성원 씨는 우수상, 박혜신·이규재·김영빈·이다래 씨는 장려상을 받았다. 이밖에 30명이 입선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외학술복지재단 관계자는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장애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 작가들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금리결정과 한은



강영문의 세상읽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여년간 지속된 금융완화 정책(저금리정책)은 그동안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저금리의 장기화는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 누증과 부동산가격 급등(저금리의 금융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 금융기관의 목표수익 달성을 위한 위험선호적(risk-taking) 영업행태 확산(리스크관리가 쉽지 않은 해외자산투자 증가), 한계기업(부실장주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도 조래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국내경기 둔화로 한국은행(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 차례에 걸친 금리인상(3·6·9월 각각 0.25%포인트 인상)과 12월 추가 금리인상 예고로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금융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가 지난해 2~3%대에서 3~4%

중반으로 상승해 가계의 금리부담이 커졌다. 또한·미간 금리역전으로 외국자본의 흐름(외국인증권 투자가 9월 이후 처음 순유출로 전환)이 바뀌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금리에 대한 기대가 일방향적(금리인상 쪽)으로 쏠리고 있어 금융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향후 금리정책 변경여부와 시기,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금리 전망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시장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야만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 시장상황은 저금리정책기조의 말기(금리리스크가 커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인상'이라는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되는 경향 발생)인데 다 앞으로 미국이 2~3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참가자들의 군집심리에 따른 기대(금리인상)의 쏠림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에서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장·단기 금리간 재정부재(arbitrage·차익거래)는 단절되고 채권 매수세는 실종되어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중앙은행이 시장과의 소통(정

책시그널 전달 등)이나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 금리에 대한 일방향적 기대가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중시한 나머지 시장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종할 경우 시장의 단견(국민경제적 이해보다는 일시적인 개인정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집착)을 수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운용이 경제의 펀더멘털(실물경제 상황)과 괴리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시장상황은 시장참가자들이 각종변수의 움직임으로 부터 중앙은행의 정책대응을 예측해 시장에 금리변경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확산되어 있는데다 내년에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어(11월 8일 FOMC회의) 국내금융시장에서의 금융불안 위험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앞으로 실물경제여건과 금융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지만 금리정책결정에 있어서 저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확산과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불안 위험의 누적 등이 비중있게 고려되었으면 한다. /전 한국금융연수원 원장·메트로신문 전문위원

부동산 이중매매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Q. A는 B로부터 C 아파트를 3억 원에 사기로 계약했는데, 그 후 C 아파트 인근에 급행철도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아 C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A에게 C 아파트를 팔기 싫어했다. 그리고 때마침 D가 C 아파트를 6억 원에 사겠다고 한다. 이에 B는 A에게 'C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했으니,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기 바란다'는 문자 한 통을 남겼고, A는 갑자기 C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그것도 문자 한 통으로 하는 B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어 B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A의 고소로 B는 처벌될 수 있을까?

A.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주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같은 부동산을 더 비싸게 사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부동산을 사겠다고 했던 사람, 즉 A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특히 A가 C 아파트를 주거목적으로 사려고 했던 경우라면 더 그렇다. 다시 부동산을 구해야 하는 문제부터 모든

일이 꼬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과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

한편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줌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죄로서(형법 제355조 참조), 부동산 이중매매를 이유로 매도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여야 한다.

이에 대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대법원은 최근에도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참조).

쉽게 말해, 만약 B가 A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A에게 B가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가 아니고, B가 C 아파트를 D에게 다시 팔았다고 하더라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3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B가 A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보통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에 주리라는 신뢰에 기해 중도금을 지급하므로, 이런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례 법리에 따라 B는 A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B가 또다른 매수자인 D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경우라면, D와의 계약은 언제든지 B가 D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므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어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71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B가 D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라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 B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057 판결 참조).

나아가 B가 다시 변심하여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 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사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반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등 참조).

참고로 B가 A에게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그림이나 조각상과 같은 '동산'을 판 경우라면, 부동산과 달리 대법원이 동산 매도인을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자로 보지 않아, 매도인이 이를 이중으로 팔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참조). /법무법인 바른

인사

- ◆국세청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슬 ▲전산운영담당관실 표진숙 ▲감사담당관실 장권철 ▲심사2담당관실 류지용 ▲역의탈세정보담당관실 김정윤 ▲법무과 김선주 ▲전자세원과 김진영 ▲법인세과 정필규 ▲자본거래관리과 김중성 ▲세원정보과 이은장 ▲세원정보과 장대복 ▲장려제신청과 심상동 ▲운영지원과 윤재갑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종복 ▲서울청 조사3과 조사과 권영명 ▲서울청 조사4과 조사1과 김상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 조사과 정경철 ▲중부청 운영지원과 박영건 ▲대전지방국세

- 청 조사과 조사관리과장 이용균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상락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과 조사2과장 이종현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이승래

- ◆한국토지정보공사 ◇상임이사 ▲지적사업본부장 최규성 ▲경영지원본부장 김기승
- ◆부산일보 ◇편집국장 강윤경 ▲편집국 선임기자 이병철

부음

- ▲조성환(예비역 육군 대령)씨 별세, 심옥자씨 배우자상, 경호(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해

- 령씨 부친상, 이석현(전 MBC 라디오국 국장)씨 장인상, 박미하씨 시부상=1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02-3410-3151

- ▲송중호씨 별세, 송창진(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송희정씨 부친상=15일 오전 6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2-3010-2236

- ▲김기영씨 별세, 김광진(뉴웨이브 대표)·김형진(NH투자증권 이사)씨 부친상, 허진태(한국갤럽 이사)씨 장인상=15일 오전 4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